

신규 축산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86. 12. 31까지 50%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축산업을 중요산업으로 지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후 3년간은 전액을,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여 왔고 그 시기가 81. 12. 31일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정부는 81년도 정기국회에서 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특별소비세법, 방위세법, 전화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교육세법 등 세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는데 이번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이번 감면은 축산업을 중요산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조항으로 소득 공제를 하여 준 것이 특징이다.

〈관련법규〉

조세감면 규제법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課稅)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소득 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①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26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43조, 제55조,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와 이익금 차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1 항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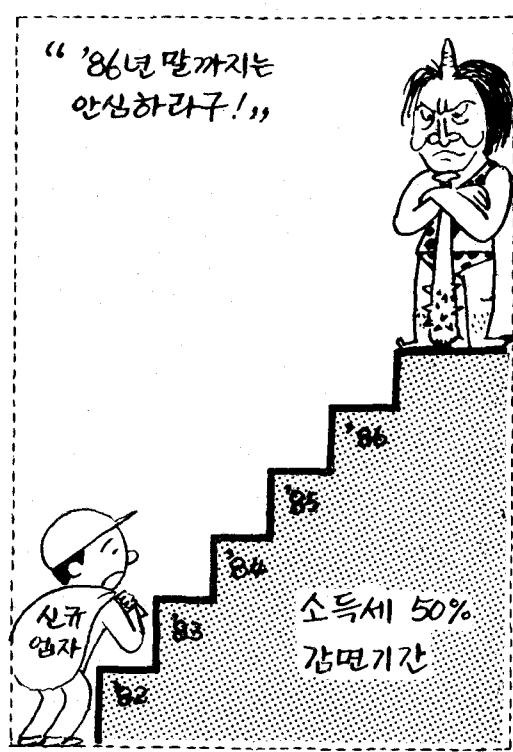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 1 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와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91조는 감면받은 소득금액의 사용한계를 법인과 개인사업체별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의 추징 규정이 있다.

제92조(감면공제 세액의 추징) ① 제11조 제 2 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 4 항, 제20조, 제26조,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43조, 제55조,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그 공제받은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 그 공제받은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日邊) 10천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체업이 징수한다.

1. 제91조에 의한 기업 합리화 적립금을 동 조 제 3 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1조 제 2 항, 제18조 또는 제43조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同條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 제 1 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또 이번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앞으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 12월 31일 까지로 감면기간이 정해져 있다.

제93조(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 期分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 구역에서引取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새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50%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축산업을 하던 자가 아직 37조의 감면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8조(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8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 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 8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중요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8 제2항(다만 同條同項 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 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 감면기

간에 한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판 계산에 있어서 전액 감면 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중요산업의 감가상각에 관한 조항으로 축산업은 중요산업의 범위에 들지 못한다.)

2. 종전의 제4조의 8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 당시의 미공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 년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 8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 ①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항에 계기하는 사업별로 각각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78. 3. 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 (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 발생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제2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78. 3. 25)

이제 축산업도 철저한 장부기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액 감면 기간에는 세무당국에서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관대하여 왔

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50% 아니면 전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 81년 같은 불황 때에도 추계과세(인정과세)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다.

차세에 소득 표준율도 현실화 하여야 하겠고 과거 세무기장을 하고 싶어도 양계산물을 판매할 때 상인들이 영수증 교부를 기피한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모든 것을 정상화함으로써 더욱 건실한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축협 등에서 계통 출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영수증 때문에 기장을 기피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양축가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장부기장으로 사라지는 인정과세”



앞으로 이 법이 공포되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축산업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분야의 발전보다도 경리부서 만이 비대하는 기형아가 되지 않도록 유통의 근대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소, 폐지, 우유의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각 도축장이나 우유조합에서 잘 해주지만 계란, 닭고기의 경우에 유독 문제가 되는 데 계란의 경우에는 양계조합 등에서 집단센타(G.P. 센타) 등을 운영하고 부로일러의 경우에 도체장을 통한 계열화 조직으로 유통구조도 개선되고 소비도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며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는 1석 4조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의 주변 여건이 이렇게 되도록 점점 여건이 성숙되어 감을 모든 양계인이 피부로 느끼기를 바란다.

사료용 수입곡류(옥수수)
안정기준가격 드디어
180\$(1톤당)로
하향 조정된다

80년 12월 27일 옥수수에 대한 안정기준가격이 톤당 195\$로 결정된지 만 1년에서 10일이 모자라는 지난 12월 17일 180\$로 하향 조정되었다.

75년 7월 31일 안정기준 가격제도가 만들어진 후 매년 2~3번씩 조정되어 왔었으나 81년에는 조정없이 그대로 넘기는가 하였는데 톤당 15\$이 내렸다.

미화화의 환율을 700대 1로 계산할 경우 15\$은 10,500원 즉 옥수수 1kg당 10.50원씩 사료 공장들이 구매하게 되어 배합사료 생산비가 그만큼 싸진다.

배합사료에 옥수수를 60% 사용하면 배합사료 1kg 생산에 6.30원이 싸질 수 있다는 산술 계산이 된다.

대체적으로 양계사료의 경우 2.7~3.5% 정도 사료값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기준 가격인하로 각 사료공장들마다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즉각 배합사료 가격을 연하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공장의 눈치를 보거나 현재 인하작업을 하고 있는 등 여러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격기준 인하를 예견하고 기왕에 값을 내려 판매하던 회사들은 이번에 가격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양축가들은 기준가격을 인하해 줄것을 관계 당국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었고 양재협회, 사료협회 등 단체들도 전의한 바 있었다.

축산물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생산비에 적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형편에 따라 판매하므로 기준가격을 내려주면 그만큼 양축가에 바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황에 적자를 줄일수 있어 당국에 기준가격을 내려 주기를 건의하였고 정부도 이러한 양축가의 뜻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축가의 생각으로는 더욱 큰폭으로 내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현재 수입되고 있는 옥수수 실세와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커 일시에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번 조정하여 업계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인 것으로 생각되어 조속한 기일내에 조정되어지기를 바라며, 사료 공장들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가격 인하요인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반영하여 주었으면 한다.

년말에도 브로일러 값은 약세

12월에는 부로일러 가격이 회복되리라던 희망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성탄절을 2~3일 앞둔 현재도 약세로 75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간 정부도 축협을 통하여 500여톤 수매 비축하였으나 가격은 계속 생산비를 밀물고 있다. 하기 좋은 말로 생산을 줄이면 될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듣는데 생산량을 알아보면 닭값이 좋았던 작년수준까지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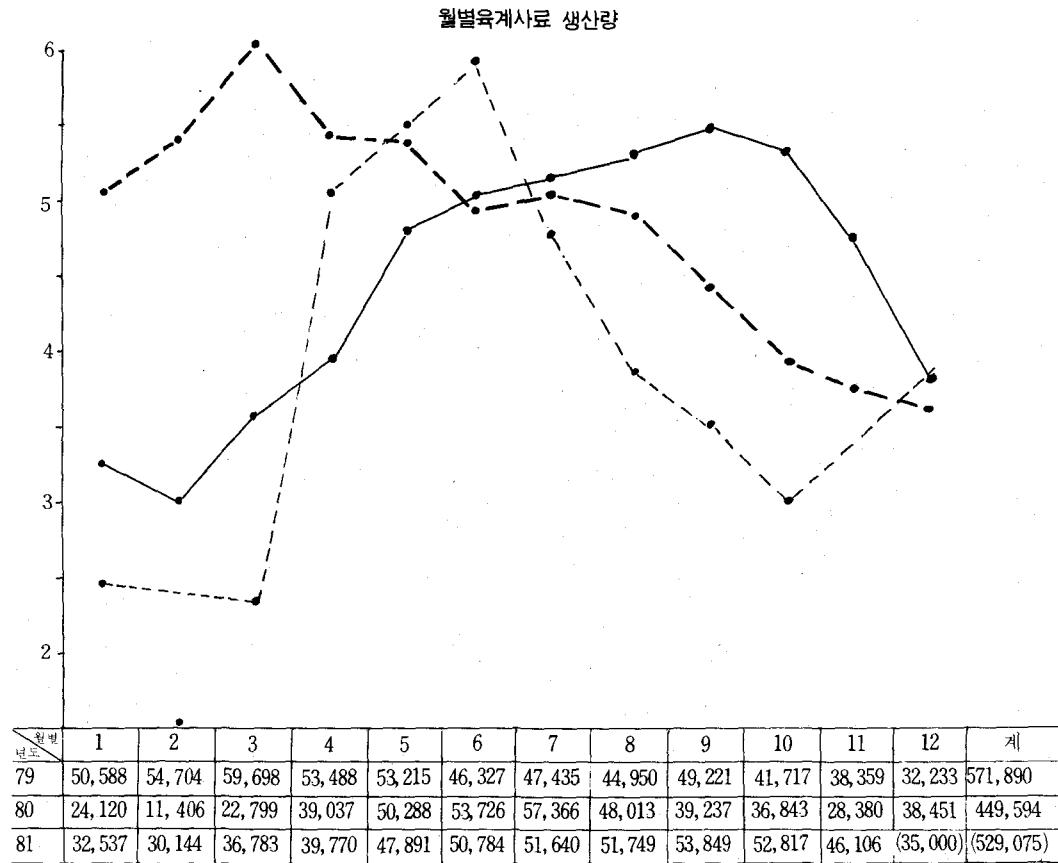
부로일러 생산량을 가장 철학적 추정할 수 있는것이 배합사료 생산량 이기에 사료생산량으로 이를 비교하여 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11월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12월에는 작년 수준을 하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 12월의 육계값이 1,000원이였던데 비해 금년 750원은 너무한 것 같다.

육계값도 서울에서 좌우하고 전국소비량의 절반이상을 서울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일반 경기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었다고도 생각할지 모르나 서울시 인구가 3.7%나 금년에 증가하였고, 오히려 닭고기 소비는 작년에 비해 17~18%증가된 것으로 배합사료 생산량은 말하고 있다. 닭고기는 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의 예에서도 그러하였던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불황일때도 소비가 증가하는것 같다.

현재 지방에서는 생산비선에서 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만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81. 12월은 추정

있고 그것도 생산비를 밀돌고 있다. 서울시의 밀도계 단속이 닭값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도계 단속은 소위 양축가에 도계법으로 (축산물 가공 처리법) 더 잘 알려지고 있으며 76년에 시행하였다가 실패하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부 법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에 대부분이 생계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도계해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여름 서울시 관계 담당관은 금년내로는 서울시에서 밀도계를 완전 근절하고 도계품으로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으나 현재 단속은 진행되어도 유통만 마비될 뿐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

이제 생산자들도 도계유통이 되기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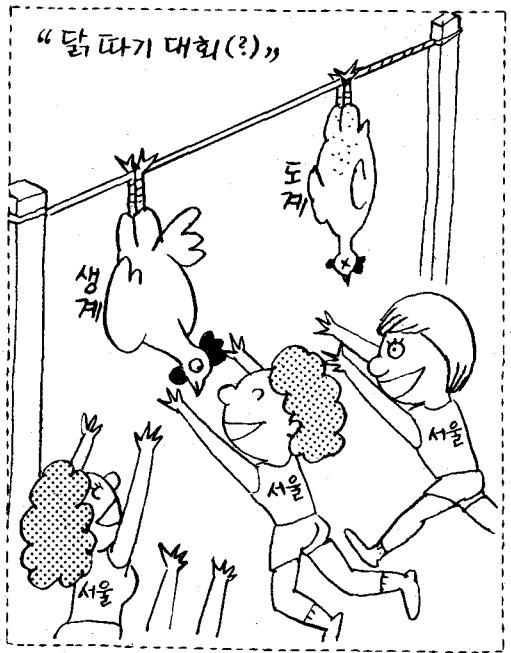
하고 하루빨리 도계유품유통이 정착되도록 그간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아왔으나 진통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첫째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도계품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의 행정력으로 단속 일변도로 과연 개혁이 가능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적은수의 서울시나 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 과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유통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확실히 증명되었고 혹자는 서울시의 단속이 더욱 강력하지 못하여 생계로 유통이 된다고도 말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속을 하려면 강력히 하고 말려면 고민두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서울시의 단속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도계유통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또는 다른 형편에 의하여 단속을 안해서 생계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6년도 처럼 생산자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산자들도 하루빨리 도계유통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협조한 상태에서도 안된다는 것은 단속 일변도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왜 도계유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본회의 연구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독자는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아직도 주위 여건이 76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무리한 논증단속으로 유통기능만 막비되어 생산자 농장에는 닭이 안팔리고 체화

되고 있는데도 시장에는 닭이 없어 소비자는 못사먹거나 비싸게 구매하는 해괴한 사태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 않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법이 있으니까 단속해야 한다는 자세보다는 왜 도계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재검토하여 도계 유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중단없는 단속과 끝이 없는 유통혼란이 새해에는 부로일러 업계에서 사라지도록 당국과 업계 및 관련기관이 함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육류 소비구조를 닦고기나 돼지고기 쪽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오늘도 닦고기의 유통은 일부가 막혀가고 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 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한다.

세원사료 (주) 천안 (2) 8001~5
서울 (713) 2205~6